'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사 회 위 원 회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1월 1일

○ 회부일자 : 1993년 11월 3일

3. 제 안 이 유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주 요 골 자

○ 지 출 건 수 : 1건 (충주공고학생 치사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 지출 결정액 : 35,000,000원

○ 지 출 액 : 35,000,000원

○ 잔 액 : 없 음

5. 검 토 의 견

'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한 바, 지난 91년도 4월 15일 발생한 충주공업고등학교 학생치사사건이 청주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92.9.17)되어, 8천 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합의 되었는바, 5천만원의 기정예산액으로는 3천 5백만원이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으로,

별첨 판결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본 사건은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학생지도부 학생 지도 및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어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임.
판결내용은 원고들에게 83,223,864원과 사건이 계류중인 기간의 일정 비율까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으나, 피해자(원고)측과 합의한 결과 8천 5백만원을 지급키로 하였음.

배상금 지급과 함께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조치내용과 당초 예산을 5천만원만 계상하게된 동기와 항소 문제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승인안 및 참고자료 : 별 첨